시민의 눈과 마음으로 함께하는 열린 의회

제114회 창원시의회 (임시회)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‘22. 04. 14.)

창원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창원시의회
(기획행정위원회)

창원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2. 04. 14.(목)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. 04. 08. 창원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22. 04. 08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제114회 임시회 제1차(2022. 04. 14.)

기획행정위원회 상정·의결(**의안번호 제1010호**)

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 설명자 : 기획조정실장 곽기권)

가. 제안이유

○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에 대비하고 창원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○ 이 조례에서 “공공기관등”이란 중앙행정기관,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관,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으로 정함(안 제2조)

○ 창원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을 정함

(안 제3조～제9조)

1) (기능) 공공기관등의 체계적인 유치활동 등 지원

2) (인원)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

3) (임기) 2년, 연임 가능

○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0조)

○ 이전공공기관의 부지매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11조)

○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공유재산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12조)

1) 중앙행정기관: 100분의 80

2) 그 밖의 공공기관: 100분의 50

○ 이주직원에 대해 이주정착 장려금 및 이주직원 자녀 장학금 등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3조)

다. 참고사항

○ 관계 법령: 참고

1)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2조제10호 및 제18조제4항

2)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」 제3조

3)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

4)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9조제1항, 제45조, 제46조

5)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43조

○ 예산조치: 예산담당관 협의 완료

○ 합　　의: 회계과 합의 완료

○ 기　　타

1) 입법예고(2022. 3. 16.～ 4. 5.) 결과: 제출 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3) 성별영향평가 결과: 여성가족과 협의 완료

4) 비용추계서: 해당 사항 없음

3. 검토내용 (전문위원 김경희)

□ 제정목적(취지)

○ **본 조례안은**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에 대비하고자 창원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,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

□ 주요내용

○ **안 제1조(목적) ~ 2조(정의)**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

○ **안 제3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~ 제4조(위원회의 구성 등)**에서는 창원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40명 이내의 위원 구성 등을 규정함

○ **안 제5조(위원의 임기) ~ 제6조(위원의 해촉)**에서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해촉사유를 규정함

○ **안 제7조(위원장의 직무), 제8조(회의 등), 제9조(간사)**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개최 요건, 공공기관등의 유치업무 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규정함

○ **안 제10조(유치활동 지원), 제11조(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), 제12조(대부료의 감면), 제13조(이주직원에 대한 지원)**에서는 예산범위내에서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,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부지매입비, 사무소건축비, 임대료 등의 지원과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사항 및 이주직원에 대한 이주정착 장려금 등 각종 지원사항을 규정함

○ **안 제14조(기반시설에 대한 투자)**에서는 이전공공기관의 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투자 가능 근거를 마련함

○ **안 제15조(비밀엄수의 의무) ~ 제16조(수당 등)**에서는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사항 누설 금지 및 수당과 여비 지급 근거를 마련함

○ **안 제17조(포상) ~ 제18조(운영세칙)**에서는 포상 지급 가능 근거와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함

□ 종합의견

○ **본 제정 조례안은**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에 대비하고, 창원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

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

※ 타 지자체 관련 규정 및 조례제정 현황(2022.3.31.현재)

위원회 구성	규 정 (2)	고창군, 창원시
	조 례 (2)	상주시, 충주시
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	별 도 조 례 (15)	충청남도, 충청북도, 동두천시, 파주시, 부여군, 홍성군, 순천시, 공주시, 당진시, 청양군, 김천시혁신도시, 평창군, 아산시, 계룡시, 익산시
	투자유치조례(6)	계룡시, 문경시, 영동군, 음성군혁신도시, 충주시, 평창군

○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차기정부 주요국정과제 채택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를 대비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적극적인 유치 추진의 기반을 조성하여 지자체간 공공기관 유치 경쟁에서의 선점할 수 있으므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보여짐

4. **질의·답변 요지** : 기재 생략

5. **토론 요지** : 기재 생략

6. 심사 결과 : **원안 가결**

7. **소수의견의 요지** : 없음

8. **기타 필요한 사항**(부대의견, 건의 사항, 촉구사항 등) : 없음